

의안번호	제662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22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2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22일
발 의 자 : 김성대 · 이정범 · 유상용
박병천 · 박봉순 · 박진희
박재주 의원

1. 제안이유

-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학령인구 포함)와 지방소멸 위기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 교육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주요 정책들의 근간이 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소통, 상호 지원 노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충북교육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충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의 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에 '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안전한 교육환경',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제12호~제14호)
- 나. 매년 8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했던 교육행정협의회의 정기회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 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학령인구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1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8월 중”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로 한다.

제9조 중 “도청의”를 “도의”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 심의”를 “정기회 및 임시회 안전 심의”로,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담당 부서 및 안전 제출 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2. (생략)	제2조(기능)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학령인구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u> <u>13.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u> <u>1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u>15. (현행 제12호와 같음)</u>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u>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4조(임기) ① ----- ----- -- <u>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등) ① (생략)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u>8월 중</u> 개최를 원칙으	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u>

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생략)

제9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

----- 도의 -----

-----.

제10조(실무협의회) ① ---- 정기회 및 임시회 안건 심의-----

-----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담당 부서 및 안건 제출 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청 간 기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정기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 사항을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의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